

|              |                |
|--------------|----------------|
| 의안번호         | 제 362 호        |
| 의 결<br>연 월 일 | 년 월 일<br>(제 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362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안 제1조)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안 제2조)
-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이 종전과 같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를 “소방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강화 등 사업비”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충청북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u>소방시설 확충 사업비</u></p> <p>3. ~ 8. (생 략)</p> |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u>소방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강화 등 사업비</u></p> <p>3. ~ 8. (생 략)</p>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br>③ (생략)<br>1. 충청북도 소속 <u>지방소방령</u> 이상의 소방공무원<br>2. ~ 4. (생략)<br>④ (생략) |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br>③ (생략)<br>1. 충청북도 소속 <u>소방령</u> 이상의 소방공무원<br>2. ~ 4. (생략)<br>④ (생략) |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u>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 <u>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u>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명 「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u> 」 | 제명 「 <u>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u> 」 |

## 관련법령 발취

□ 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생략)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 ④ (생략)

### 부 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기본법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전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부세법 [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